

영등포구의회  
제142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08. 12. 4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송수희 의원의 7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  
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 
드리겠습니다.

## 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11. 14
- 제 안 자 : 송수희 의원(외 7인)

## ■ 제정(제안) 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 
설치하고,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 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 
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목적에 기금을 활용할  
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
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 ■ 주요골자

-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옥외광고물 활용 수익금,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으로 함(안제2조)
-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 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함(안제3조)
-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,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(안제5조)
-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고,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함(안제9조 내지 제10조)

## ■ 관련법규

- 「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

## 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강북구, 강동구

## 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개정(2007. 12. 21)됨에 따라 같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-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전입금, 보조금,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,
-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며,
-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수입·세출예산의 현금계좌로 관리하고,
-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, 경관개선, 간판시범거리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2. 4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**제6조의2 (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)**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, 경관 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그 밖에 시·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1]